

고

시

●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-1057호

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취소(양주회천 A-4BL)

국토교통부고시 제2018-989호(2019.01.04.)로 승인 고시된 양주회천 A-4BL 공공주택건설사업(국민임대) 계획을 『공공주택 특별법』 제55조에 따라 승인 취소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5년 01월 03일

국 토 교 통 부 장 관

1. 사 업 명 : 양주회천 A-4BL 공공주택 건설사업(국민임대)

2. 사업시행자

○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: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한준

○ 주 소 :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(충무공동)

3. 사업시행지역 : 양주신도시(옥정·회천) 택지개발지구(회천) 내 A-4BL

4.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

가.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: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취소

나. 사유 : 「공공주택 특별법」 제5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정변경(주택유형 변경 등 지구계획 변경)으로 계속적인 주택건설사업 시행 불가능 [주택유형 : 국민임대 → 뉴:홈 선택형(6년임대)]